

드라마 < 무브 투 헤븐 >로 알아보는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위해, 보호자 역할을 하는 ‘후견인’을 선임하여 권익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드라마 < 무브 투 헤븐 > -나는 유품정리사입니다.

아스퍼거증후군을 가진 ‘그루’가 삼촌이자 자신의 후견인인 ‘상구’와 함께 세상을 떠난 이들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주면서 마음을 맞추어 나가는 이야기를 담은 웹드라마입니다.



[그루(20)]



아버지를 떠나 보내고 혼자 남은 스무 살 ‘그루’에게 어느날, ‘상구’가 불량한 모습으로 찾아와 다짜고짜 그루의 보호자를 자처합니다.

그루의 아버지인 ‘정우’가 생전에 ‘자신이 사망할 경우 이복동생인 상구가 그루의 후견인이 되어줄 것’을 희망하는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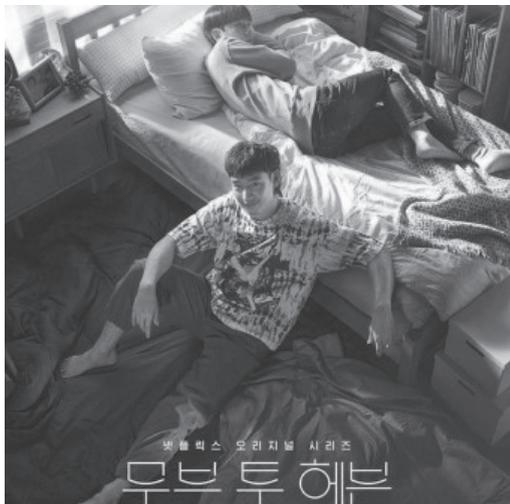


[상구]

출소 후 변호사 '현창'에게 소식을 들은 상구가 금전적 이득을 기대하고 그루의 후견인이 되어주기로 하며 그들의 동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후견인'은 무엇이며, 성인인 그루가 '후견인'을 왜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영화 속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위해, 보호자 역할을 하는 '후견인'을 선임하여 권익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루는 성인이지만,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 후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루의 아버지와 변호사 현창은 「민법」 제 9조에 의하여 '그루의 성년 후견인 선임'에 관한 후견 계약을 체결합니다.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 후견과 임의 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 후견에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이 있습니다.

1. 임의 후견

이 중에서 그루의 성년 후견인 선임에 관한 후견 계약을 다루는 것은 '임의 후견제도'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임의 후견제도'와 '후견 계약'에 대해 더 알아보을까요?

그루의 사례는 '후견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임의후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



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그루의 아버지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상구가 그루의 후견인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깁니다.

이 유언장은 「민법」 제959조의14 제2항을 근거로 후견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 보호와 재산 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 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뿐 아니라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상구가 처음에는 그루가 상속받은 재산을 탐내며 그루의 후견인이 되어주었듯, 성년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가정 법원과 ‘성년 후견감독인’이 성년 후견인의 후견 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데 작중에서는 변호사 현창이 담당한 역할입니다.

여기서 질문!

만약 성년 후견인이 임무를 적당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후견인이 변경될 수도 있나요?

가정 법원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후견인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2. 4. 자 2020스647 결정을 통해 ‘성년후견인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까요?

〈사건 개요〉

뇌출혈 발병으로 거동이나 의사 소통을 할 수 없게 된 甲은 큰 형인 乙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통해 乙이 甲의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甲의 자녀 丙은 위 심판 확정직 후, 乙 등이 甲의 재산을 빼앗고 후견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후견인 변경 청구를 하였고, 원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성년후견인을 丁 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환송 요지〉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1) 재항고인 乙이 수행한 재산관리와 신상 보호 업무가 적당하지 못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2) 사건 본인 甲의 사정을 감안할 때, 신상 보호 업무의 관점에서 丁사단법인이 재항고인 乙보다 더 적합한 성년후견인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3) 후견 개시 심판절차에서 후견인이 선임된 직후에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기

존의 후견 개시심판절차에서의 심리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 우려가 큼니다.

결론

즉, 성년후견인 변경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균형감 있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940조에서 규정하는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성년 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양 측면의 임무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